

운영규정 개요

기 관 명	늘예랑노인주간보호센터	지정일자	2016.05.03
급여유형	재가) 주간보호	이용정원	45명
기관의 장	이예원	연락처	031)853-5656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28번길 22, 삼성플러스 10층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3,000 원 (1식)	
	간식	1,000 원 (하루)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시설	○		○		○	○	○		○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모집방법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온라인 오프라인,지인소개,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의료서비스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를 취한다.
배상책임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폭력성,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만,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신원인수인 권리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전화,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한다.

늘예랑 주간보호센터 851-5656^{10 F}

